

과목명: 보험론



담당교수: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정호일

주교재: 보험과 리스크 관리

제11장 사회보험(11-1)

목 차

- 1절 사회적 위험
- 2절 사회보험제도 개관
- 3절 국민연금

제 1 절 사회적 위험

1. 사회적 위험

1) 경제적 안정성의 성격

- 꾸준한 소득의 흐름
- 실질적 소득의 보장
- 실질적 생활수준(빈곤선) 이상의 소득확보
- 상대적 측면에서 경제의 안정성

2) 경제적 불안정성의 성격

- 소득상실
- 추가적 지출 - 의료비, 개호비
- 불충분한 소득
- 소득의 불확실성

3) 경제적 불안정성의 원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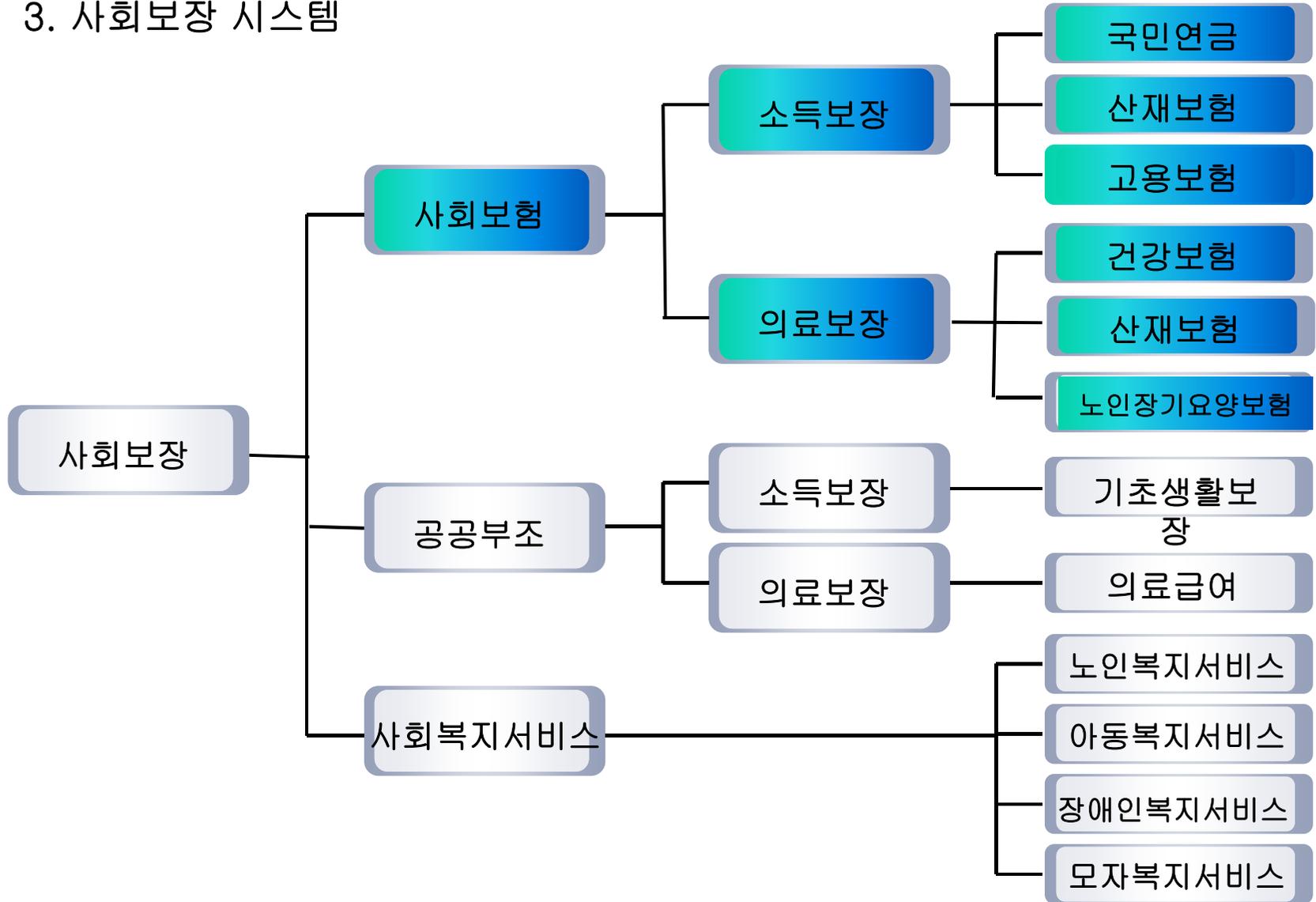
- 가장의 조기사망 – 피부양자의 소득상실, 추가비용
- 노령 – 소득의 중단/감소, 의료비 지출, 건강상의 문제
- 실업
 - 근로소득의 중단 및 감소 – 경제적 불안
- 기준 이하의 저임금
 -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수준 이하의 소득
- 인플레이션
- 개인적 요인
 - 야망과 동기부족, 낭비벽, 투자/저축/보험에 무관심
 - 이혼, 알코올, 약물, 도박, 가정폭력

제 2 절 사회보험 제도 개관

1. 의의

- 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불안(노령, 질병, 상해, 실업) 감소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 사회보장의 구성 :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 VS. 사회보험의 공통점
 - 국민의 경제적 생활 보장 목적, 소득보장(현금, 현물)
- 사회보장 VS. 사회보험의 차이점
 - 대상의 범위 (사회보험: 일정한도, 사회보장: 전국민)
 - 사회보험-개별적 제도화, 사회보장-하나의 제도
 - 사회보장-세금에 의존, 사회보험-보험료에 의존

3. 사회보장 시스템



2.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1) 우발적 경제필요의 충족

- 민영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보험조건을 결정
- 사회보험은 보험급부와 수익자의 소득에 따라 법적 결정

2) 개별보험료 대 평균보험료

- 민영보험-개인의 위험률에 의해 차등보험료 부과
- 사회보험-가입자 전체의 평균위험률에 의한 평균보험료를 부과: 위험률이 낮은 계약자가 높은 계약자를 보조
 - (예외-산재보험의 업종별 위험등급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 집단의 평균위험률 적용 - 예정위험률 ≒ 현실의 위험
 - 강제보험이므로 역선택이 존재치 않음
 - 평균위험률의 채택으로 위험률이 높고 보험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보험담보 제공 가능

3) 필요에 상응하는 급부

- 빈곤자의 생존보장을 위한 목적-보험료와 관계없이 필요에 상응하는 급부를 제공

4) 현물급부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일정수준의 진료, 치료, 처치
-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 의료비 인상,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비용 변동 위험을 부담

5) 도덕적 위태의 문제

-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급부 청구를 제한
- 보험급부를 인정하는데 주관적 요소가 개입소지 많음

6)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 민영보험-대수의 법칙(경제단위의 결합)
- 사회보험-보험료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을 위해 고용주, 국고재원으로 일정한 개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평균보험료를 부과 - 공동체적 성격이 강함.

7) 보험자의 지불능력이 국가에 의해 보장

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 각 제도가 정부주도하에 분립적으로 발전
-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대상
- 가입자 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 정부의 예산 지원은 극히 제한적
- 사회보험을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
- 제도간 중복과 상충이 존재하며 사각지대 공존
- 사회보험 급여의 종류
 - 현금급여 (연금,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실업급여, 장애급여 등)
 - 현물급여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 서비스급여 (직장알선, 사회재활, 직업재활 및 복지사업)

사회보험제도의 개요

	도입	법률	기능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재정관리
국민건강보험	1977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질병발생시 보험급여 제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특별회계
국민연금보험	1988년	국민연금법	소득 상실시 노령, 장애, 유족연금 제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	1995년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 급여 제공 등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 중풍 등 수발 서비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특별회계

사회보험의 급여종류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현물급여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고용알선 ·직업능력개발	·요양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실업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수발)
관련사업 (서비스)	·대부사업 ·복지사업	·보건교육 ·직영의료기관		·재활사업 ·산업안전관리 ·산재의료원 관리 사업	

➤ 고용안정사업 :

- 고용조정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촉진시설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

-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금, 교육훈련지원금, 재취직훈련, 직업훈련시설 비용대부, 중고령자 수강장려금

사회보험의 적용 및 재원조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수 (2009년 기준)	4,843.1만명	1,858.2만명	970.7만명	1,396.8만명	건강보험과 동일
보험료율 (2012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5.8% (사용자, 본인 1/2씩) - 지역: 부과표준 소득 점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지역: 9% (사용자·본인 1/2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1.1% (근로자, 사용자 각 1/2씩)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사용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결정. 고시 하며 업종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의 6.55%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급여비 일부 관리운영비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가입 자 보험료 일부 - 관리운영비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비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비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급여비 일부 관리운영비 일부

제3절 국민연금

1. 제도의 목적 및 연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따른 소득보장
- 국민연금 이외의 특수직역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1999년 4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
- 2003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 사업장으로 편입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월 80시간 일하는 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 2012.9 현재 1,998 만명(순수가입자)

2. 급여구조

1) 국민연금의 구성

- 기본연금= 균등부분 + 소득비례부분
 - 균등부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 소득비례부분: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 소득수준
- 부양가족연금
 -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2)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① 노령급여

- 연령, 가입기간, 소득의 존재여부 등 급여의 지급 조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자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65세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자로 60세 달한 자	기본연금액의 47.5%~92.5% + 가급연금액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	기본연금액의 (75%~95%)가급연금액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 50%~90% 감액
특례 노령연금	제도도입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자 로서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	(가입기간 5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
분할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자	배우자이었던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연계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합계가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인자	연계 대상 가입기간에 대하여 각 연금제도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지급

② 장애급여

-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
- 완치일 또는 2년 경과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입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2/3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음.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③ 유족연금

- 국민연금가입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시 사망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에게 지급되는 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급연금액
10년~20년	기본연금액의 50% + 가급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가급연금액

④ 반환일시금 혹은 사망일시금

연금수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반환 일시금이 지급되고 가입자 사망 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지급

수급요건	급여수준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에 달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지급 안 되는 경우) 99년 4월1일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로서 사업장/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3년 만기 정 기예금 이자율 적용) +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가산금(1년 만기 정기금 리 적용)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혈족)

3. 재원조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연금보험료 징수(연금보험료=가입자의 표준월소득액*연금보험료율)

구분		88-92	93-97	98-99.3	99.4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		3.0	6.0	9.0	9.0

*퇴직금전환금이란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지역/임의/기타	95. 7- 2000.6	2000.7 -05.6	2005.7월 이후
임의 계속가입자	3.0	4.0-8.0	9.0

급여청구의 소멸시효: 5년